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485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붙임 2)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일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❷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2억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 ~ 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업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 붙임 3)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 야	계	업종별 △10~△20% 미만		업종별 △20% 이상	
		업종(개)	업종 예시	업종(개)	업종 예시
광·공업	105	71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22	17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15	10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	-	9	여행사업
운수	20	9	택시 운송업 자동차 세차업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교육	10	3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직원 훈련기관	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위생	11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영화·출판·공연	28	12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오락·스포츠	12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건축·자재	8	8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
상점	6	6	상품 종합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	-
식품	10	10	식물성 유지 제조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
기타	21	14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	예식장업
계	**277**	**165**	-	**112**	-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개)	업종 예시	지원금(만원)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2억원	매출 2억~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계	**277**	-	-			

3.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0**만원, **100**만원
⇒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원**

○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30(월)**부터 실시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 기		대 상
신속지급	1차(8.17일~)	- **버팀목자금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감소율 10%이상 20%미만)
	2차(8.30일~)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등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1. 신속지급

1 1차 신속지급 : '21.8.17일~

○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 신청기간 : '21.8.17(화) 08:00~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자금.kr)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2 2차 신속지급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영업제한·경영위기**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비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

○ **신청기간 : '21.8.30일~ 예정**

-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1차 신속지급과 동일, 희망회복자금.kr)**

2. 확인지급 *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 **신청기간** : '21.9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1.11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20시 운영)

붙임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기준**

1. 소기업 판단 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개업시기	소기업 판단 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
'19년	'19년 신고매출액 환산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20년 상반기	'20년 신고매출액 환산액 또는 '20.7월 ~ '21.6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	'20년 신고매출액 부재시(0원 포함) 지원 제외
'20년 하반기	개업 익월 ~ '21.6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
'21년 상반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6월 개업 사업체는 소기업 규모인 것으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frac{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 현금영수증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

2. 지원단가 산정 기준 :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 적용

3.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영업제한·경영위기)

개업시기		매출액 감소 비교 적용 항목*							
		'19. 연 '20. 연	'19. 상 '20. 상	'19. 상 '21. 상	'19. 하 '20. 상	'19. 하 '20. 하	'20. 상 '20. 하	'20. 상 '21. 상	'20. 하 '21. 상
'18년 이전		○	○	○	○	○	○	○	○
'19년 상반기		-	-	-	○	○	○	○	○
'19년 하반기		-	-	-	-	-	○	○	○
'20년 상반기	영업제한	조치 시행 전월까지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과 조치 기간이 포함된 월의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비교							
	경영위기	'20. 5 ~ 7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과 '20. 12 ~ '21. 2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비교							
'20년 하반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21년 상반기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반기 매출액 비교 시 해당 반기의 과세인프라 합산액 적용

붙임 3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분야	업종	분야	업종
광·공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생활용품 (5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영화·출판·공연 (16개)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모 방적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방적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면직물 직조업	여행 (9개)	면세점		**영화관 운영업**
	모직물 직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사진 처리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여행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적 임대업
	한복 제조업		박물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모피제품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연극단체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무용 및 음악단체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자연공원 운영업**		공연 예술가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운수 (11개)	철도 여객 운송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도시철도 운송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전세버스 운송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오락·스포츠 (10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원유 정제처리업		외항 여객 운송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합금철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항공 화물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공항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6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카드 제조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오락장 운영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일차전지 제조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보육시설 운영업	기타 (8개)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독서실 운영업		호텔업
	강선 건조업	위생 (8개)	유사 의료업		여관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이용업		휴양 콘도 운영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피부 미용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의복 (5개)	남자용 겉옷 소매업		기타 미용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욕탕업		예식장업
	기타 의복 소매업		마사지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신발 소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산업용 세탁업		

* **녹색** 감소율 60% 이상(5개) **황색** 40% 이상 60% 미만(23개) 20% 이상 40% 미만(84개)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광·공업 (71)	면 방적업	화학섬유 방적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펄프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	강 주물 주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구름베어링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건반 악기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전시용 모형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의복 (17)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신발 도매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직물 도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한복 소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생활용품 (10)	담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운수 (9)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세차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	-
교육 (3)	직원 훈련기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위생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
영화·출판·공연 (1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지도 제작업
	시각 디자인업	문서 작성업	복사업	기타 공연단체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오락·스포츠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건축·자재 (9)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유리 및 창호 도매업	도료 도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상점 (6)	상품 종합 중개업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	-
식품 (10)	콩나물 재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차류 가공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기타 (14)	수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민박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매니저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